

제 67회 제 1차 목포시의회 회의록

1. 개 의 : 단기 4290년 6월 1일 상오 10시 5분
2. 폐 의 : 단기 4290년 6월 1일 하오 12시 10분
3. 장 소 : 목포시의회 의사당
4. 사 회 : 의장 김 삼 성
5. 출석의원 : 재적 16명 전원
결석의원 없음
6. 출석공무원 : 시장 하동현
부시장 이병규 및 각과장

7. 의사일정

◆ 보고사항

- (1)제 62회 회의록 통과
- (2)제 63회 회의록 통과
- (3)제 64회 회의록 통과
- (4)진정서 접수 상황보고
가)유달 제재소 설치 찬성 및 반대의 건
나)상선고등학교로부터 제출된 진정의 건
다)보광동 주민으로부터 제출된 진정의 건

◆ 부의안건

- (1)목포시 도로손상 부담금 징수조례 개정의 건
- (2)시유재산 매각 및 매수의 건
- (3)단기 4290년도 제 2회 목포시 일반회계 세입·세출 추가경정 예산의 건
- (4)단기 4290년도 제 3회 목포시 수도 특별회계 세입·세출 추가경정 예산의 건

건

- (5)나수비료 공장 주 모집의 건
- (6)목포시 동 서기 정원조례 폐지의 건
- (7)목포시 상수도 확장공사비 자체부담액 중 일시차입의 건
- (8)목포시 교육위원회 교육감 직무대리조례 개정의 건
- (9)목포시 교육위원회 재무조례 개정의 건

9. 토의사항

◎ 제 62회 회의록 통과
서기 박찬대 낭독. 이의 없으므로 통과

◎ 제 63회 회의록 통과
서기 박찬대 낭독. 이의 없으므로 통과

◎ 제 64회 회의록 통과
서기 박찬대 낭독. 이의 없으므로 통과

◎ 유달 제재소 설치 찬성 및 반대의 건

◇의장 김 삼 성

- 내무위원회에 회부조사 차기회에 보고토록 선언.

◎ 상선고등학교로부터 제출된 진정의 건

◇의장 김 삼 성

- 문사위원회에 회부 심의케한 후 본 회의에 보고 토록할 것을 선언.

◎ 보광동 주민으로부터 제출된 진정서 처리의 건

◇의장 김 삼 성

- 문사위원회에 회부 심의한 연후 보고토록할 것을 선언.

◎ 목포시 도로손상부담금 징수조례 개정의 건

◎ 단기 4290년도 제 2회 목포시 일반회계 세입·세출 추가경정 예산의 건

◎ 단기 4290년도 제 3회 목포시 수도 특별회계 세입·세출 추가경정 예산의 건

◎ 목포시 동 서기 정원조례 폐지의 건

◎ 목포시 교육위원회 교육감 직무대리조례 개정의 건

◎ 목포시 교육위원회 직무조례 개정의 건

◇정 응 표 의원

- 전기 6건은 각기 상임위원회에 회부 심의케 한 연후 본 회의에 상정토록 할 것을 동의하다.

- 재청 - 삼청이 있었다. 표결결과 재석 16명 만장일치로 가결되다.

◎ 시유재산 매각 및 매수의 건

서기 박찬대 제안 이유설명

◇정 응 표 의원

- 본 건 초대 의회시부터 구상하여왔던 문제이고 필요 불가결한 조치라 하겠으니 원안통과 동의하다.

- 재청 - 삼청이 있었다. 표결결과 만장일치로 가결되다.

◎ 나주비료공장 주 모집의 건

정태로 전 산업과장 제안 이유설명

◇강 영 락 의원

- 저반 도 상공과장 일행이 내목하여 본 건에 대한 좌담회를 개최하였을 적에 방청한 사실이 있다. 본 건은 당시 상수도 문제와도 조건이 개재될 문제라고 보아질 적에 상수도 문제가 아니면 비트할 수도 있는 문제라고도 보아집니다.

◇김 경 인 의원

- 본 건에 대하여 시장님의 구체적인 방안을 청취코자 합니다.

◇하 시장

- 본 건에 대하여는 거도적으로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각 시군별로도 조직하기로 되어 당 시에 있어서도 각정당, 사회단체등을 총 망라하여 진지한 논의를 거듭한바 있었으나 그 석상에 참석한 의원들의 동의로써 활동면에 대한 부분은 의회에 맡기기로 작성된 것입니다. 그리고 강 의원의 발언과 같이 당 시 상수도 문제와도 관련시킬 수 있는 것이나 현금 나주 측의 모든 정보를 검토하고 있으며 은인자중으로서 최선을 다하여도 또다시 나주 측에서 반기를 든다면 중앙당국에서도 묵인 않을 것으로 보아집니다. 본 건에 대하여 내부적인 문제는 공표불능이오니 개별적으로 말씀드리겠으며 이는 현금주의가 아닌 것이며 신입만을 받게 되는 것이니 제 의원께서는 이에 대한 추진방도만을 타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◇명 남 철 의원

- 상수도 문제에 있어서 나주 측에서는 극력 반대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해결도 있기 전에 비료공장의 주 모집을 활동할 단계는 아니라고 보아져서 본 의원은 반대하고 싶습니다.

◇정 응 표 의원

- 명 의원의 의견에도 일리가 있다고 보아지는 것이나 우리의 성의를 나주 측에 표시시키는 견지에서 덮어놓고 주 모집을 한다는 것이 아니고 상수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술적인 방안을 모색하여야 될 것이다. 이러한 의미에서 의장 및 각 분과위원장들이 책임을 지고 처리방안을 수립할 수 있도록

제 의원이 찬성하면 동의하겠다.

◇하 시장

- 나주비료는 국책회사인 것임으로 우리가 반대할 수는 없는 것이고 상수도 문제에 대하여 나주 측에서 반대한다는 것에 대하여 중앙에서도 지극히 분개하고 있는 것입니다. 그리고 본인이 중앙요로에 자치법 제 124조의 해석을 극력 역설한바 있어 중앙에서도 납득한 분이 계시는 것입니다.

- 방금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주 모집에 있어서는 현금이 아니고 신청서로 신입만을 받는 것이니 참고로 말씀드립니다.

◇김 경 인 의원

- 상수도 문제에 대하여 나주 측에서 반대한다는 것은 극히 유감스러운 일이다. 그러나 대국적인 견지에서 영세농가의 비료형편도 고려하여 이에 대한 복안을 집행부 측에 일임키로 하고 토론 종결할 것을 동의하다.

- 재청 - 삼청이 있었다.

◇정 응 표 의원

- 나주비료가 설립되고 목포의 상수도가 완성되면 이 이상 좋은 일이 없을 것이다.

- 본 건 의장과 각 분과위원장에게 일임하여 그 체계를 수립하여 차기회의에 보고할 수 있도록 동의집에 첨가한다.

- 동의집 수락

김경인 의원 동의. 표결결과 만장일치로 가결되다.

◎ 목포시 상수도 확장공사비 일시차입의 건

◇서기 박 찬 대

- 제안 이유 설명하다.

◇강 영 락 의원

- 방금의 제안 이유설명과 같이 저번 통과시켰던 기재안에 대체하는 부득이한 조치인 것이니 원안대로 무수정 통과 할 것을 동의하다.

- 재청 - 삼청이 있었다. 표결결과 만장일치로 가결되다.

◇정 응 표 의원

- 전반회의에서 미취학 아동조사와 월구학생 조치문제에 대한 조사를 한 바 있었으나 아직까지 하등의 방안을 세우지 않은 것 같고, 이러한 폐습을 명년에도 답습할 우려가 있는 것이고, 월구학생에 대한 조치와 학부형과 결탁하여 이를 조작한 교직원의 조처에 대한 방안을 본 회의의 결의로써 교육감에 통고하여 내 4일 개최되는 본 회의에서 답변하도록 동의하다.

- 재청 - 삼청이 있었다. 표결결과 만장일치로 가결되다.

- 본일 지상보도에 의하면 무등산호의 매각처분운운의 기사가 보도되었다. 이를 매각한 뒤의 영세어민에 대한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본 회의에서도 좌시할 수 없는 것이니 이에 대한 존치대책과 진상조사 위원회를 구성하되 그 지명은 의장에게 일임할 것을 동의하다.

- 재청 - 삼청이 있었다. 표결결과 만장일치로 가결되다.

◇의장 김 삼 성

- 정응표, 김경인, 김창희, 김일섭, 박두순 의원을 지명

- 산회 선언하다.

(하오 12시 10분)

위 회의록을 확인키 위하여 자이 서명 날인함

단기 4290년 6월 2일

시의원 김 상 대

시의원 임 석 희

작성자 서기 주 도 식

제 67회 제 2차 목포시의회 회의록

1. 개 의 : 단기 4290년 6월 4일 상오 10시 5분
2. 폐 의 : 단기 4290년 6월 4일 상오 10시 8분
3. 장 소 : 목포시의회 의사당
4. 사 회 : 부의장 정 응 균
5. 출석의원 : 재직 16명중 출석의원 9명
결석의원 김삼성, 김경인, 강영락, 김남진, 이정권, 김창희, 천철수 의원
6. 출석공무원 : 부시장 이병규 및 각과장
7. 의사일정

◇김 성 균 의원

- 오늘은 교육자치제 실시 5주년 기념일로써 우리 의회에서도 전원이 식전에 참석하여야 될 것이니 금일의 의사일정을 변경하여 회기를 명 5일까지 연장(1일간)키로 하고 이대로 폐의할 것을 동의하다.
- 표결결과 만장일치로 가결되다.

◇부의장 정 응 균

- 산회선언

(상오 10시 8분 현재)

위 회의록을 확인키 위하여 자이 서명 날인함

단기 4290년 6월 5일

시의원 김 성 균

작성자 서기 주 도 식

제 67회 제 3차 목포시의회 회의록

1. 개 의 : 단기 4290년 6월 5일 상오 10시 30분

2. 폐 의 : 단기 4290년 6월 5일 하오 5시 35분

3. 장 소 : 목포시의회 의사당

4. 사 회 : 의장 김 삼 성

5. 출석의원 : 재직 16명 전원

결석의원 없음

6. 출석공무원 : 부시장 이병규 및 각과장

교육감 박세문 및 유학무과장

7. 의사일정

◆ 보고사항

각 상임위원회 심의 사항보고

◆ 부의안건

(1)유달 제재소 설치 찬성 및 반대의 건

(2)상선고등학교로부터 제출된 진정서 처리의 건

(3)보광동 주민으로부터 제출된 진정서 처리의 건

(4)목포시 도로손상 부담금 징수조례 개정의 건

(5)단기 4290년도 제 2회 목포시 일반회계 세입·세출 추가경정 예산의 건

(6)단기 4290년도 제 3회 목포시 수도 특별회계 세입·세출 추가경정 예산의 건

(7)목포시 동 서기 정원조례 폐지의 건

(8)목포시 교육위원회 교육감 직무대리조례 개정의 건

(9)목포시 교육위원회 재무조례 개정의 건

8. 토의사항

◇김 일 섭 의원

- 본일 회의의 의사일정에 각 분과위원장의 보고사항이 있는데 우중으로 인한 산업위원장이 불참이오니 잠깐 회의를 중지하였다가 김 의원의 참석을 기다려 속개토록 할 것을 동의하다.

- 재청 - 삼청이 있었다. 표결결과 만장일치로 가결되다.

- 회의 중지중의 공간을 이용하여 해무청장으로부터 무등산호에 대한 경위 설명이 있었음.

◇의장 김 삼 성

- 속개 선언하다.

(11시 정각)

◎ 무등산호 존치대책에 관한 건

◇김 경 인 의원

- 의사일정을 변경하여 무등산호에 대한 문제를 직각 상정하여 토의할 것을 동의하다.

- 재청 - 삼청이 있었다. 표결결과 만장일치로 가결되다.

- 해상보호지구내의 어족을 보호하기 위하여 중대한 임무를 가지고 있는 무등산호를 매각처분 운운한다는 것은 수산행정을 몰인식한 처사라 아니 할 수 없는 것이다.

- 당 의회로서는 여하한 난관이 있더라도 해무등산호를 해무청 산하에 이양하도록 추진할 것을 동의하다.

- 재청 - 삼청이 있었다.

◇정 응 표 의원

- 본 건 매각 동기자체가 무안군 순항선조합에 양도한다는 조건으로 도 의원 수인의 작난에서 기인된 것 같다. 측문한 바 무등산호는 객선으로 개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하며 타 도에서는 사종(斯種)선박은 전부 해무청산하에 이양하였다는데 본 도에서는 이를 매각 운운한다는 것은 본 도수산 행정 침체를 여실히 증명하는 것이다.

- 도 의회에서는 본 건 심의를 위하여 분과 위원회를 개최된다 하오니 우리의회에서는 금일이라도 진정위원단을 상도(上道)파견 교섭토록 할 것을 동의집에 첨가.

- 동의집 수락
김경인 의원 동의. 만장일치로 가결되다.

◇의장 김 삼 성

- 전차회의에서 지명하였던 대책위원 중에서 2, 3인 정도 호선하여 금일 오후라도 출발토록 할 것을 선언하다.

◎ 각 상임 위원회 심의사항 보고

◇문교사회 위원회 김 상 대 의원

- 첫째, 상선고등학교 진정문제에 대하여
현재 상선고등학교는 국립으로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입생이(지원자) 극 소수임으로 학교운영에 애로가 극심한 것 같다. 당 시로서는 여하한 난관이 있더라도 기설교인된 이 학교를 유지하여야만 될 것으로 보아져서 문사위원회의 결의로서는 학교측과 의회가 합동하여 중앙에 건의하도록 합의를 보았습니다.

- 둘째, 보광동 주민으로부터 제출된 진정문제에 대하여
이 사회에서는 있어서 아니될 아름답지 못한 가정의 2, 30호 있는 것입니다. 이 부류를 하루속히 발본색원하기 위하여 행정부와 의결부가 경찰 당국에 건의하여 선처하도록 결정을 보았습니다.

- 셋째, 문사소관인 추경예산안 교육위원회 직제조례 개정안 및 재무조례

등 각각 원안대로 통과를 보았습니다.

◇김 성 균 의원

- 해양고등학교 문제는 문교사회 분과위원회로 하여금 조속히 중앙파견을 하여 교섭토록 하여야 될 것이고 보광동 문제는 경찰당국에 극력 건의하여 발본색원토록 할 것을 동의하다.

- 재청 - 삼청이 있었다.

◇김 창 희 의원

- 해양고등학교 진정에 대한 소개의원으로써 발언하겠으나 바다를 제패하는 나라는 세계를 제패한다는 말도 있거니와 우리나라의 바다를 감당하고 나설 중견인물을 양성하는 해양고등학교의 중요성을 재 인식하여 김성균 의원의 동의와 같이 하루속히 진정위원을 중앙에 파견하여야될 것이다. 그리고 보광동의 공창아닌 사창이 공공연하게 개문하고 있다는 것은 실로 부끄럽기 짝이 없는 일이오니 이 문제는 사회적이며 국가적인 문제라고 아니할 수 없는 것이다. 이 문제를 경찰에만 일임할 것이 아니라 해양고등학교 문제로 중앙에 파견되는 기회에 사회부에도 들러 아울러 호소하여 두도록 요망하는 바이다.

◇강 영 락 의원

- 의사진행으로 한 말씀 발언하겠으나 청원서는 지방자치법에 명시된 지방주민의 권리인 것이니 이에 대하여 청원에 대한 소개의원의 설명도 안듣고 분과위원회에서 가부처결 한다는 것은 신중성을 결여할 우려가 있는 것이다.

- 그리고 보광동의 인육시장 문제는 사창이 외국에서 원조하여준 재건축택 내에서 성행하고 있다는 것은 언어도단이라 아니할 수 없다.

- 그 주택이 시장의 명의로 되어있는 것이니 우리 집행부 측에서의 권한을 발동하여 해당자의게는 거주권을 취소할 수 있는 방안을 수립토록 할 것을 제의하는 김성균 의원의 동의에 참가한다.

- 동의집 수락

김성균 의원 동의. 표결결과 만장일치로 가결되다.

◇산업분과 위원장 김 남 진 의원

- 산업분과 위원회 소관인 추경예산안은 원안대로 통과를 보아 내무위에 넘겼습니다.

◇내무분과 위원장 김 일 섭 의원

- 각 분과 위원회에서 넘겨온 안건 및 내무위원회 소관 각 안건을 원안대로 통과를 보았으나 문사위에서 넘긴 교육위원회 재무조례만은 아직 심의를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.

◎ 유달 제재소 설치 찬성 및 반대 진정서 처리의 건

◇정 응 표 의원

- 유달제재소 설치에 대한 찬성 및 반대의 양 진정서를 검토컨대 교회측의 반대진정은 설치 허가신청도 있기 전에 제출하는 등 모순이 있었으며 이 진정은 어디까지나 집행부 측에서 결정권이 있는 것이고 아직 하등의 결정도 나기 전에 의결부 측에 심의한다는 것은 집행부에 대한 권한침해라 아니할 수 없기 때무래 내무위원회에서는 양 건 공히 집행부에 이송하기로 결의를 보았습니다.

◇강 영 락 의원

- 교회측의 반대진정 소개의원으로서 내무위원회에서 처리된 안건을 번복시키라는 것은 아니나, 의사당 내에서의 의원의 발언은 책임을 부하 하여야 될 것이다.

- 재작일 내무위원회에서 본 건을 심의 도중 종교를 모독한 언사를 쓴 의원이 있었다는 것은 유감이라 아니할 수 없다. 그리고 본 건은 보안법 및 원동기 취체규칙의거. 설치허가는 불가능한 것으로 보아지는 것이나, 집행부에서 일단 허가한 연후 이 문제를 논의한다는 것은 착잡할 것이라고 보아지는 것이다.

◇김 창 희 의원

- 타인의 권한을 침해하고 자기가 잘 살겠다고 하는 것은 종교인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이다. 본 건 집행부에 일임하고 본 의회에서 절충의원 2인 정도를 선출하여 조절토록 하는 것이 온당한 조치라고 보는 것이다.

◇강 영 락 의원

- 본 건을 지상에까지 보도시켜 사회문제에까지 파급된다면 수습하기 어려운 곤경에 함입되는 것이니 선처있어야 될 것이다.

◇김 남 진 의원

- 강 의원의 종교적인 입장에서 천명한다는 것은 이해할 수 있는 문제이나 각 의원의 심중은 살피지 않고 종교를 모독하였다 운운의 발언은 신중히 하여주기 바란다.

◇정 응 표 의원

- 재작일의 본 회의에서 결의한 바 있는 월구학생에 대한 진상등 교육감에게 질의할 것을 동의하다.

- 재청 - 삼청이 있었다. 표결결과 만장일치로 가결되다.

- 학구를 무시하고 월구 취학하는 예가 많다. 즉 서부학교에서는 전 교사를 동원하여 조사한 연후 교육청에 건의한 사실에 있다하나 우금 하등의 대책이 없다한다.

이들 월구학생에 대한 조치와 전학등을 병자하여 학부형과 결탁 월구를 조종시킨 교직원의 비위사건에 대한 대책은 여히 할 것인가. 명백히 답변하여 주기 바란다.

◇김 성 균 의원

- 어느 학교는 비품등 환경정리가 잘 되어있는가 하면 또 어느 학교는 이와 정반대인 이유와 추경예산 통과시에 논의되었던 소모품관계 빛 극빈 아동에 대한 교과서 무상배부여부와 미취학 아동의 취학정도 등을 설명하여주기 바란다.

◇김 상 대 의원

- 중앙 국민학교의 준공지연이유 여하.

◇김 창 희 의원

- 취학아동의 월구문제는 서부 대 북교교가 극심한 것이다. 학부형의 입장에서 거리관계등 편리한 곳을 선택하는 것이다. 그런데 서부교의 위치등이 문제인 것이니 왕년에 구상하였던 목포 고등학교와 서부 국민학교를 천지할 것을 문교당국에 절충할 의향은 없는가.

◇박 두 순 의원

- 사친회비 300환이상은 안 받게 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공연히 학급유지비와 학급월례회비를 징수하고 있는 사실을 아는가.

◇김 경 인 의원

- 초대 의회시부터 계속사업이었던 목사 부속 국민학교 문제에 대하여 현금교육세 60%이상 징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교실수리등 미진된 이유여하.

◇명 남 철 의원

- 특부 2,500만환 통과 당시 사친회비 외에는 안 받겠다는 것과 중앙 국민학교 공사 관계 등의 조건을 무시한 이유 및 극빈자로서 미취학 아동에 대한 조치여하.

◇조 양 순 의원

- 저반 분과위원회 개최당시 학무과장의 출석요구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출석 않은 이유를 설명하라.

◇김 남 진 의원

- 중앙 국민학교의 전별금 처리문제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기 바란다.

◇박 교육감 답변

- 서부학교 대 북교 국민학교의 월구 취학아동은 지금부터 시발된 것이 아

니고 과거부터 있었던 것이고 이에 대한 자세한 답변은 주무과장으로부터 보충답변이 있겠으나 학부형과 결탁한 교원은 조사하여 엄중처단 하겠다.

◇유 참 덕 학무과장 답변

- 현금까지 월구 아동에 대한 조사결과는 북교학교에 12명 중앙학교에 13명 산정학교에 3명이 있었는데 거(지난) 5월 30일부로 각각 반환조치를 시켰습니다.

- 그리고 미취학 아동에 대하여(3,390명) 학구별로 조사하여 제출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.

◇김 성 균 의원

- 이로써 오전회의를 중지하고 오후 2시부터 속개 할 것을 동의하다.

- 재청 - 삼청이 있었다. 표결결과 만장일치로 가결되다.

◇의장 김 삼 성

- 속개 선언하다. (하오 2시 현재)

◇박 교육감 답변 계속

- 첫째, 사친회비 입회비가 아니라 찬조일 것이다. 그리고 기타 잡부금 문제는 본인이 일선교육이 있었기 때무래 그 각도가 달라졌다. 잠깐의 여유를 주시면 다시 한번 고려하여 답변 하겠다.

- 둘째, 중앙학교 전별금 문제는 금시초문이니 조사하여 보겠다.

- 셋째, 서부 대 목고간 대체문제는 교실의 광협으로 난항일 것 같으나 일응 절충하여 보겠다.

- 넷째, 교과서 무상배부문제는 예산에 계상 되었다면 실천하겠다. 그리고 학급 월례회비, 자모회비 등사판대의 징수등은 이 후 여사한 사례없도록 단속할 방침이다.

◇김 남 진 의원

- 집행부 측의 답변은 잘 들었다. 과거 교육위원회의 예산안이 상정될 때마다 교육위원회와 시 의회간 상호 견제하여 알가알부 논의된 바이었고, 각종 잡부금 문제등 시민의 비난이 극심한 실정이니 본 회의의 결의로써 5개 국민학교의 조사위원회를 구성 조사토록 할 것을 동의하다.

- 재청 - 삼청이 있었다. 표결결과 만장일치로 가결되다.

◇김 성 균 의원

- 동의집에 참가하여 조사위원 3인을 5인으로 할 것과 이 기회에 사친회비 운영면 까지를 조사토록 하자.

◇김 남 진 의원

- 조사위원 5인으로 하자는 것은 수락하겠으나 사친회비 운영면 까지는 감사할 수 없을 것이다.

- 김남진 의원 동의 표결결과 재석 16명 중 가 13표 가결

◇의장 김 삼 성

- 조사위원으로 김경인, 명남철, 이정권, 김남진, 천철수 의원을 지명

- 김상태 외 4의원으로부터 동 연합회 해산 결의안이 제출되었기로 상정한다.

◇김 상 태 의원 제안 이유설명

- 지방자치법을 비롯한 여한한 법에도 인정되어 있지 않은 동 연합회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단체이며 더욱이 공청안에 여사한 단체를 존치 시킨다는 것은 불법인 것이니 우리 의회의 결의로써 이를 해산시킬 것을 동의하는 바입니다.

◇강 영 락 의원

- 저반 대폭적인 동 인사의 동 발령 당시 의회측 에서도 상당히 발동하였으나 집행부 측에서 고집하였던 것이 동 연합회의 활동을 백지화 시켰는가 하면 적십자회비 징수등 동 연합회를 중용한다는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라 아니 할 수 없는 것이다.

◇정 응 표 의원

- 집행부에서는 동 연합회를 구성하도록 지시한 사실이 있었는가. 그렇지 않으면 해산하라는 명령을 내린 사실이 있었는가 답변하여 주기 바란다.

◇이 부시장 답변

- 동 연합회를 구성하도록 지시한 사실은 전연 없다.

- 집행부로서는 단지 동장 상호간의 친목계로만 알고 있는 것이다.

◇김 경 인 의원

- 공무원법 제 40조를 몰인식한 처사라고 보아진다.

◇김 성 균 의원

- 부시장이 말씀한 동장 친목계는 별도로 구성되어있고 연합회가 존립하여 있는 것이다.

◇이 부시장

- 단순한 친목계로만 알고 있었던 것이 그렇게 되었다면 유감된 일이다. 의회 측에서 해산할 것을 주장하신다면 해산하도록 노력하여 보겠습니다.

- 김상태 의원 외 4의원 결의안 표결결과 만장일치로 가결되다.

◇김 상 대 의원

- 시정 감사보고가 있는 후 월여가 경과한 지요 지음. 각 동의 소맥분 부정배급등 세간에 물의가 분분하다. 지금으로부터 대행정부 질의를 전개할 것을 동의하다.

- 재청 - 삼청이 있었다. 표결결과 만장일치로 가결되다.

- 금반의 시찰여행으로서 대전, 충주, 청주 등 각 시를 시찰하였는데 중앙도매시장 운영문제가 선입감이 들었으며 타시와 당시를 비교하여 볼 때 한심스럽기 한량없는 것이다. 이를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한계와 공탁금 수령여부를 답변하여 주기 바란다.

◇명 남 철 의원

- 수입양곡 도정에 있어서 부산물과 정곡간의 비율이 격심한데 부산물 감량이 생긴 이유를 아울러 답변하여 주기 바란다.

◇김 창 희 의원

- 미가 조절 양곡배정에 있어 빈부동(洞)의 차별이 없었음은 어떠한 이유이며 이 것은 어떠한 근거에서 배정한 것인가.

◇김 경 인 의원

- 국가 공무원 법이나 지방 공무원령에 공무원은 소속장의 허가없이 타업체를 겸임할 수 없게끔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뚜렷한 사업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다. 이에 대한 조치는 여하히 할 것인가.

◇김 상 대 의원

- 공휴일이나 국경일 외에는 휴무가 없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모동의 실례를 보면 평상시에 공공연히 폐문한 이유는 무엇인가.

◇김 성 균 의원

- 저반 대폭적인 인사이동은 능률향상을 도모한 것 같은데 그 후의 실적여하.

◇강 영 락 의원

- 모 동장은 시장실의 출입이 너무 빈번하한 감이 있다. 동장들의 직무충실을 촉구한다.

◇명 남 철 의원

- 동 직원의 인사이동은 동정세 100%징수를 이유로 하였는데 그 후의 실적을 살펴보면 구태의연하다. 이에 대한 답변을 바란다.

◇김 성 균 의원

- 호병과에 전용직인 비치의 용의는 없는가.

◇전산업과장 정 태 로 답변

- 김상대 의원 질문의 중앙도매시장 사용료는 5월 15일로서 완납을 보았으며 주차장 문제는 과거부터 노력하여 보았으나 결실을 못보아 유감으로 생각하는 바입니다.

- 명남철 의원 질문의 수입양곡 부산물과 정곡의 차이등은 수입대맥과 국산맥의 배율책정에 있어서 시험도정이 끝난 후 농림부에서 내려 오게된 것이나 당시 직영후로는 6, 700가마니의 부족량이 생기 하였습니다.

- 김창희 의원 질문의 방출미 배정 문제는 본 도산업국장 내목시의 지시에 의거 호별세 5등이하의 세대에 배정한 것입니다.

◇김 상 대 의원

- 정 과장의 답변에 의하면 행정부의 무능력함을 여실히 폭로한 것이다.
- 중앙 도매시장의 운영 졸렬과 주차장 대여등 한심스러운 일이며 세입면을 무시한 처사라고 지적하니 할 수 없는 것이다.

◇장 건 식 총무과장 답변

- 김경인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
공무원의 타직 겸임부당성에 있어서는 법령에는 명시되어 있으나 현재 받는 봉급으로서는 생활유지에 곤란한 형편임으로 묵인하였다고 볼 것이다. 그러나 우리 직원중에서 이러한 사람이 있다면 조사후 선처할 방침이다.

- 김상대 의원 질문에 대하여

법정휴일 외에 동사무소 폐문상태에 있는 동이 있는 듯 하나 이는 최근 적십자회비 징수로 총동원하였는데 기인하였을 것으로 본다.

김성균 의원 질문에 대하여 동행정은 당초목적 그대로 착착 강화일로에 있는 것입니다.

- 강영락 의원 질문에 대하여

동장이 시장실 출입이 빈번하였다 함은 사무연락으로 인할 것이나 차후 주의시키겠다.

- 김경인 의원 질문에 대하여

정치운동에 관여한 동장의 신분조치에 대하여는 도당국에 질의하여 답변하여 드리겠다.

◇박 규 성 전 호적 병무과장 답변

- 김성균 의원 질문에 대하여

저반 사무감사시에 말씀 드린바와 마찬가지로 호병과 전용관인 비치에 대하여 도에 신청하였던 바 1관처 1직인 주의라 하여 거절당하였습니다. 그러나 인접 광주시는 전용관인을 비치하였다 하기에 탐문하였던 바 도에 임의로 비치하였다 하니 이 후 당 시에서도 상시의 결재를 득하여 실시할 계획입니다.

◇강 영 락 의원

- 회의법정 시간이 경과하였으나 회의시간을 무제한 연장할 것을 동의하다.

- 재청 - 삼청이 있었다. 표결결과 만장일치로 가결되다.

◇김 상 대 의원

- 방출미, 소맥분 등 부정사실을 각 동 전반에 공하여 16명 의원 전원이 조사위원단을 구성 조사토록 할 것을 동의하다.

- 재청 - 삼청이 있었다.

◇명 남 철 의원

- 부산물 관계도 아울러 조사할 것을 첨가.

◇강 영 락 의원

- 동 직원의 근무 상태도 조사할 것을 첨가.

◇정 응 표 의원

- 양곡등 배급당시 동정세 부대 징수등 조건을 미 수배한 사실등도 아울러 조사할 것을 첨가. 동의집 세 의원의 첨가 동의 수락

- 김상대 의원 동의. 표결결과 만장일치로 가결되다.

◎ 목포시 도로손상 부담금 징수조례 일부개정의 건

◇명 남 철 의원

- 전문 위원회에서 심히 검토한 연후 상정한 것이니 제반절차를 생략하고 원안 무수정 통과할 것을 동의하다.

- 재청 - 삼청이 있었다. 표결결과 만장일치로 가결되다.

◎ 단기 4290년도 제 2회 목포시 일반회계 세입·세출 추가경정 예산심의의 건

◎ 목포시 동 서기 정원조례 폐지의 건

◇김 창 희 의원

- 이상 3건 역시 전문분과 위원회에서 심히 검토한 것이니 제반절차를 생략하고 원안 무수정 통과할 것을 동의하다.

- 재청 - 삼청이 있었다.

◇강 영 락 의원

- 본 건등은 의결부의 권한 중에서 최대 중요한 안건인 것이다. 이를 일괄적으로 통과시킨다는 것은 무모한 처사일 것이니 과목별로 축조 심의할 것을 개의회하다.

- 재청 - 삼청이 있었다.

- 강영락 의원 개의 표결결과 재석 16명 중 가 3표 부결되다.

- 김창희 의원 동의 표결결과 재석 16명 중 찬성 10표 가결되다.

◎ 목포시 교육위원회 교육감 직무대리 조례개정의 건

◇김 성 균 의원

- 본 건 역시 전문분과 위원회에서 심심히 검토한 것이니 원안대로 무수정 통과할 것을 동의하다.

- 재청 - 삼청이 있었다. 표결결과 만장일치로 가결되다.

◎ 목포시 교육위원회 재무조례 제정의 건

◇의장 김 삼 성

- 본 건은 목하 내무위원회에서 심의중에 있으니 차기 회의에 상정토록하고 보류할 것을 선언.

- 방금 결의하였던 방출미, 소맥분 부정배급 및 부산물 관계, 동 직원 근무상태 담당부서를 별표와 여히 지명 (각동은 여(如)별표)
부산물 관계 조사위원으로 김남진, 조양순, 김경인, 김상대, 명남철, 정응표
각 의원

- 폐회 선언하다.

(하오 5시 35분 현재)

- 끝이어 폐회식이 있었음.

위 회의록을 확인키 위하여 자이 서명 날인함.

단기 4290년 6월 7일

시의원 김 상 대

시의원 김 성 균

작성자 서기 주 도 식